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42

발의연월일: 2022. 4. 13.

발 의 자: 박광온 · 이장섭 · 전용기

송갑석 · 홍영표 · 윤영찬

김영배 • 이탄희 • 이병훈

이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여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최대주주, 최대출자자, 특수관계인 제외)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정의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암과 같은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은 경력단절 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병력(病歷)이 있는 여성들이 취업 등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에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

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 2021.7.2.)과 같이 현행법에도 경력단절여성의 요건 중 퇴직 사유에 중증질환을 추가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인해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을 지원하고 치료 이후의 삶을 지속할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 중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및 중증질환"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단절 여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증질환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	
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	
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	
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	
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 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 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 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 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 3. (생략) ② ~ ⑥ (생 략)

-								
_								
-								
-						결혼	•	임
_	신 •	출산	• 육	o}·	자녀	교육		<u>및</u>
e	중증	질환						
2	• 3	(혀	해고	간으	-)			

- 2.•3. (연행과 샅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